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9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22일, 엄샛별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9월 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유지에 힘쓰고 알코올 오남용 등 음주 폐해 감소 를 위한 조기 선별과 재활을 지원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 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주청정지역 용어를 금주구역으로 수정하여 금주에 대한 경각심 제고(안 제2조, 제3조, 제10조)
-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재활 지원(안 제9조)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금주구역 내 음 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신청 조항 신설하며,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 제9조 신설은 부서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금주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발의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 조례 제12조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3의2에 의거 법령의 위임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는 것을 명시화하고 있음.
-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